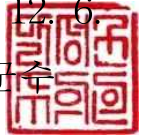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42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고자 설치된 특별회계였으나, 직영 골재채취장 폐지 후 현재 별다른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여건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되어 금년도 기간만료되는 조례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일반회계로 통합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3. 10. 10. ~ 10. 30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